

#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70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6. .  
제 출 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정이유

- 안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을 통하여 위원회의 창조적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안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.
- 나.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직무내용과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다. 위원회의 회의 소집 사유와 의결 방법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라. 위원회의 회의 결과 심의·조정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
## 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(건강생활실천협의회)
- 「지역보건법시행령」 제2조(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)

## 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□ 예산수반사항

- 위원회 참석수당 : 70,000원\*20명 = 1,400천원(본예산에 기반영)

## □ 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없음

- 입법예고 : 2008. 5. 19 ~ 5. 28.(10일간)

## □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안산시 위원회 통합운영 계획 (2008.5.11.)
- 「안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」
- 「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

#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시행령」 제2조 및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에 따라 보건의료시책과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협의·자문을 위한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능)**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·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3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
4.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
5.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도 및 교육
6.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3조 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지역주민
2. 보건의료관련기관, 단체, 학계,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보건의료관련전문가
4. 관계공무원

**제4조 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 (위원의 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 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 (간사 등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보건업무 담당주사 또는 팀장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8조 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
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
3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

4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
**제9조 (심의 · 조정사항의 처리)**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 ·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수당 등)**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1조 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안산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와 「안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」를 폐지한다.

임 안 자	소관실과		상록수보건소
	실 · 국장 직위 · 성명		상록수보건소장 정 동 규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	보건행정담당 김 오 천
	담당자 성명 · 전화		정 수 미 (행정 5906)